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소멸대응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출자·사용 근거 마련(안 제44
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 또
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지역활성화를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 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또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하거나 사용한 분야 또는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분야 또는 대상으로서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자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또는 대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거나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지역활성화를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 지역혁신 · 지방성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또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u> <u>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소멸대응 · 지역혁신 · 지방성장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하거나 사용한 분야 또는 대상</u> <u>2. 제1호와 유사한 분야 또는 대상으로서 지방소멸대응 · 지역혁신 · 지방성장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자금사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또는 대상</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거나 사
용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8